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1574
-----------	------

2024년 2월 27일
교육 위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2월 5일, 최유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3. 상정일자 :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유희 의원)

-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3월 동 조례를 공포·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이나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본 조례의 실효성이나 필요성이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더욱이 조례가 규정하는 사회적가치 교육은 개념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준법교육, 노동인권교육 등과 유사성이 높고 내용이 광범위해 실제 조례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폐지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최유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574호로 발의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구성된 위원회 등이 전무하고, 사회적 가치 교육이 민주시민교육, 준법교육, 노동인권교육 등과 유사하여 별도로 사회적 가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실익이 적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적 가치 교육 조례’)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서울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양시키는 교육활동을 진흥하고자 2021년 3월 제정·시행되었습니다.
- 여기에서 사회적 가치는 인권 보호와 노동권 보장, 사회통합 증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및 양성평등 실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헌법적 가치로서의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가치로 경제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상위 가치”입니다¹⁾²⁾

1)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2018.3.)」, 13쪽.

2)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와 문재인 정부의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

- ‘사회적 가치 교육 조례’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운영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³⁾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⁴⁾ 이에 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됨⁵⁾에 따라 조례 제정이 검토되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제정 이후 사회적가치교육위원회 구성, 사회적 가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⁶⁾ ‘사회적 가치 교육 조례’ 제5조제1항에⁷⁾ 따라 해마다 수립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 교육지원계획 역시 한 차례도 수립·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더욱이 사회적 가치 교육은 개념적으로 다른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활동이나 현행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범교과 학습 주제와 중복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교육의 정의에 포함되는 15가지 세부 개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춤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등에 따라 장려되는 교육활동과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인권 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범교과 학습 주제와 중복성이 높았습니다.

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2018.3.)」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범위가 동일함.

- 3)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2018.3.)을 통해 정부혁신 추진 3대 핵심 과제로 ① 사회적 가치 구현, ② 참여협력, ③ 신뢰받는 정부를 제시하고,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 중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①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재정투자 확대와 ②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을 제시함.
- 4)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국정과제 12), 사회적 경제 활성화(국정과제 26) 등을 포함하여 정부 운영 전반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음.
- 5) 박광온 의원안(의안번호 2100001)과 홍익표 의원안(의안번호 2103712)이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임.
- 6) 최근 3년 간(2021~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교육위원회는 구성된 바가 없었음.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10월 제출한 자료(최근 3년간 조례 근거 시행 계획 수립여부 등, 행정관리담당관-15525(2023.10.31.))에 따르면, 사회적가치 교육지원계획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같음됐던 것으로 나타남. 한편, 동 폐지조례안의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2022년과 2023년 5백만원 씩 편성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았음.
- 7) 제5조(사회적 가치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이는 사회적 가치 교육이 다른 범교과 교육활동 안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조례 운영의 측면에서도 다른 부서의 사업 영역과 중복될 여지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 사회적 가치 교육의 세부 개념과 유사·중복되는 범교과 교육 현황

(2024.2.17. 기준)

연번	「사회적 가치 교육 조례」에 따른 '사회적 가치 교육'의 세부 개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	조례에 따른 학습 주제(활동)
1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인권교육
2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의 유지	안전·건강교육	노동인권교육, 학생 보건교육 등
3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4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민주시민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 통합 증진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다문화교육
6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7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8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인성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9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원·학생 대상 교육훈련
10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11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태전환교육
12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시민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13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성평등 교육
14	문화적 권리의 보장과 일과 여가의 조화		
15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 현재 ‘사회적 가치 교육 조례’에 따른 사업 실적이나 조직, 계획 등이 부재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낮고, 사회적 가치 교육이 개념적으로 광범위해 조례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의회 차원에서 폐지조례안 의결과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이 제정된 조례에 따른 사업 운영이나 위원회 구성을 해태함으로써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을 현저히 감소시킨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지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폐지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실 의견과 동일하게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 교육하기 어렵고, 각 취지에 따라 유사 조례가 존재해 이미 다른 조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917, 2024.2.16.)⁸⁾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행정관리담당관-1917, 2024.2.16.)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